

## 제조물책임(PL)의 이해

글·나경수 편집위원장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PL)법의 그간의 제정과정을 보면,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결합제조물 책임법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해 12월 16일 국회에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을 확정하였다. 이후 2001년 1월 12일자로 공포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영어의 Product Liability를 측면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일명 생산물책임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제조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 제조사, 판매자, 수입업자 등 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관계한 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의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PL법에서는 제품사고 시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되는 무과실주의 또는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배상책

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PL법이 발효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고 소비자 측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제조업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중시되는 소비자주권시대로 이행한 것이 PL법을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 동안의 수출드라이브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엇보다도 기업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등한히 하여 미약하였던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또 소송기간이 길어 소비자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현 제도하에서는 사고 발생시마다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구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PL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동안에 강력히 제

기되어 왔다.

경제개방화 물결속에서 또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와 부응한 제도정비차원에서는 PL법 도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발도상국들과 경쟁하기 조차도 어렵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PL제도는 1960년대초 미국에서 판례로 도입되어 발전된 것으로 1985년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일본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브라질, 필리핀과 같은 후발개도국은 물론, 소비자보호 개념이 희박한 러시아, 중국, 형거리 등과 같이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어 PL법 도입은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이즈로 보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실책임제도를 고수하고 있어 선진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국내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OECD가입을 한 선진국이라는 상황에서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조물책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히 결함없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품원가가 상승하고 제조물책임소송에 따른 부담증가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혁신하고 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유도하여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은 품질향상, 표시방법개선, 소비자상담창구 확대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과 제품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발생된 비용증가분을 기업내부에서 소화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표준화와 물류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생산업체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무결함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차선책으로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조물책임과 연계되어 있는 이상적인 보험메뉴가 출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도 없는 실태에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도 선진국에 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말끔히 면책되거나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군다나 PL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통상 엄청난 금액이어서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보상한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보상한도를 높이려면 제조업체인 피보험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결국 이 PL법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최대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출고하는 것이며, 그밖에 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것으로 제조업체는 소비자를 위해 가일층 분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